

#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, 2021.2.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1년 2월 1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###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(안)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II.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,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목	세부인정사항
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	<p>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 다만,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,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. 급여대상</p> <p>가. 대퇴(기기형, 밴드형), 요골(기기형, 밴드형), 패드형</p> <p>1)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</p>

	<p>에 사용한 경우</p> <p>2) '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-침습적 지혈기구'를 동시 사용한 경우 라도 1종만 인정함</p> <p>나. 밴드형,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</p> <p>2.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</p> <p>3. 상기1.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</p>
--	---
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②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·응답

연번	질의	답변
1	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(동의서, 의무 기록부 기재 등)으로 하되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
2	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다가 진행이 어려워 대퇴동맥으로 혈관조영술이나 중재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인정여부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골동맥과 대퇴동맥은 동일 천자부위가 아니므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각각 인정 가능함</li> </ul>
3	동일 천자부위에 '대퇴(기기형)'과 '패드형' 2개 사용 가능한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 천자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'대퇴(기기형)' 또는 '패드형' 1개만 인정 가능함.</li> </ul>

연번	질의	답변
4	급여대상간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?	<p>○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.</p> <p>(예시1) 대퇴(기기형, 밴드형), 요골(기기형, 밴드형), 패드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부위 지혈시는 인정</li> <li>- 혈액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.(비급여 대상 아님)</li> </ul> <p>(예시2) 밴드형, 반창고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혈액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후 지 혈시 사용은 인정</li> <li>-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부위 지혈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(비급여 대상 아님)</li> </ul>

##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	
III. 치료재료		III. 치료재료	
제목	세부인정사항	제목	세부인정사항
제1장 일반사항		제1장 일반사항	
<신설>	<신설>	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	<p>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 급여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 다만,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,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아야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. 급여대상</p> <p>가. 대퇴(기기형, 밴드형), 요골(기기형, 밴드형), 패드형</p> <p>1)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</p> <p>2) '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-침습적</p>

현 행	개 정
	<p><u>지혈기구'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 종만 인정함</u></p> <p>나. <u>밴드형, 반창고형</u>  <u>혈액 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</u>  <u>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인정개수</u>  <u>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</u>  <u>1개만 인정</u></p> <p>3. <u>상기1.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</u>  <u>하지 아니함</u></p>